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에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직장,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현행 조례상 ‘서울 소재 대학(원)생’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9조)
- 나. 그 밖의 문구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(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
 - (2)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17조의2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6. 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진아(☎2133-756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
2. 시에 소재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(자영업자 포함)
3. 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

제11조 중 “신체활동장려사업”을 “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”으로, “전문

가는”을 “전문가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 립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<u>서울시</u> 예 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	제5조(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 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.
제9조(비용의 지원) ①·② (생 략)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<u>서울특별 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로</u>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	제9조(비용의 지원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</u> <u>람으로</u> ----- -----. 1. <u>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</u> <u>사람</u> 2. <u>시에 소재한 직장에 종사하</u> <u>는 사람(자영업자 포함)</u> 3. <u>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</u> <u>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</u> <u>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</u> 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 등) <u>신체활동장려사</u>	제11조(수당 등) <u>시장은 신체활동</u>

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장려사업 ----- 전문가
에게 -----
-----.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
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서울 소재 대학(원)생을 ‘신체활동 장려사업’ 참여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, 기추진 중인 사업의 참여 대상자와 동일하며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진아(☎ 2133-7563)